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투 자 유 치 과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자본금 출자안

구 미 시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자본금 출자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구미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반도체특화단지, 방산혁신클러스터, 대구경북신공항 등 핵심 인프라와 연계한 신규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목적이 있음

나. 본 사업은 2026년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하였고, 2027년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토지 보상 등 계획에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구미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예정에 따른 자본금 확보가 필요함

다. 이에 구미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개요

(1) 출자기관 : 구미도시공사

(2) 출자금액 : 현금 350억원(전액 시비)

(3) 출자시기 : 2026년(100억원), 2027년(250억원)

※ 출자금은 사업추진 상황 및 자금 소요 시점을 감안하여 시기 등을 조정

(4) 출자금용도 :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자본금

(5) 구미도시공사 자본금 현황

(단위 : 억원)

현 금 출 자				비 고
계	원시자본금 ('99. 10)	공사전환 출자금 ('23. 12)	개발사업 자본금 ('24. 12)	
275.01	5.01	20	250	최대출자 가능한 수권자본금 5,000

※ 출자 후 구미도시공사 자본금 625.01억원

나.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개요

○ 사 업 명 :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 사업위치 : 장천면 묵어리 산170-2번지 일원

○ 사업규모 : 963,179㎡ ※ 산업시설용지 65만㎡

○ 사업기간 : 2025 ~ 20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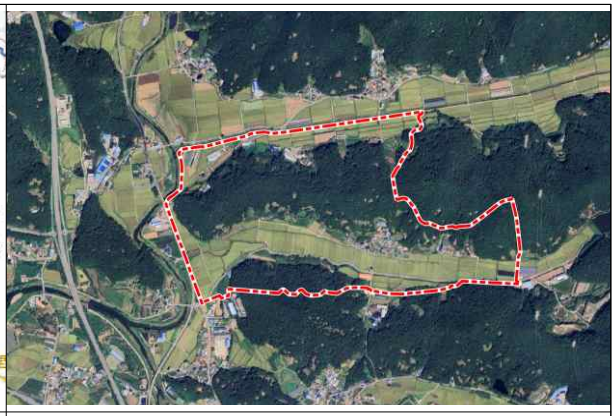
○ 사 업 비 : 3,426억원

○ 추진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 사업시행자 : 구미도시공사



사업 위치



사업 구역

다. 출자 필요성

○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제1~5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는 산업클러스트를 구축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배후도시로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구미시 핵심 정책 사업임

○ 본 사업은 타당성 검토 및 시의회 사업동의안 원안가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를 위한 절차를 추진 중임

○ 이에 구미시는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구미도시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재정법」 제18조

(2)「지방공기업법」 제53조

(3)「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4) 구미도시공사「정관」 제4조

나. 예산조치 : 2026년(100억원), 2027년(250억원) 예산 편성

※ 출자금은 사업추진 상황 및 자금 소요 시점을 감안하여 시기 등을 조정

다. 합　　의 : 예산재정과

라.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구미도시공사 정관」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하고, 시에서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자본금 출자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지방재정법」제37조(투자심사)에 따라 실시한 중앙투자심사(행안부) 결과에 의거한 사업시행자(구미도시공사)의 자본금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2026년	2027년 ~	합계
세출	10,000	25,000	35,000

※ 출자금은 사업추진 상황 및 자금 소요 시점을 감안하여 시기 등을 조정

4.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2026년	2027년 ~	합계
국비			
도시			
시비	10,000	25,000	35,000
민간			
기타			
합계	10,000	25,000	35,0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투자유치과 과 장 김정욱(054-480-6120)
팀 장 정은진(054-480-6146)
주무관 권민선(054-480-6149)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자본금 증자 규모 및 일정(안)

- 자본금 증자 총액: 350억원
- 자본금 증자 시기: ’26년(100억원), ’27년(250억원)

※ 출자금은 사업추진 상황 및 자금 소요 시점을 감안하여 시기 등을 조정

- 자본금 증자 목적: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소 관 부 서		투자유치과
입 안 자	과 장	김 정 욱
	팀 장	정 은 진
	담 당 자	권 민 선 (480-6149)